

베이징시, 드론 ‘전역 보유 금지’ 조치 시행

- 11. 15.부터 수도 전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물론 갖고 있는 것도 금지 -

발행일 2026. 9. 15. | 제2026-7호

베이징시가 9. 11. 「무인항공기 관리규정」을 고쳐 11. 15.부터 베이징 전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물론 갖고 있거나 사고파는 것까지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 단행

→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올 조치는 아니나, 시설·행사 단위 ‘관리형 대드론’ 모델을 설계하는 데 참고 가치

□ 조치내용 개요

가. 무엇이 언제 바뀌나

-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(우리의 시의회 격)가 9. 11. 개정안 의결, 9. 13. 공포, 11. 15. 시행
- 원규정이 올해 5. 1. 시행된 지 불과 반년 만에 규제를 전면 강화한 것. 중국 전국이 아닌 베이징시 한 곳의 조치
 - * 등록만 하면 가질 수 있던 드론을 이제는 아예 갖지 못하게 바꾼 것이 핵심

나. 왜 만들었나 : 법이 밝힌 목적

- 제1조에 목적을 ‘수도 안전 수호’로 못 박고 「반테러리즘법」을 직접 근거로 인용
 - * 드론을 항공안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·대테러 문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법 조문에 분명히 한 것
- 관리 책임은 시·구 정부가 지고, 전체 지도·감독은 시 공안기관(경찰)이 맡음(제2조)

□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

가. 무엇이 금지되나(제3~5조)

관리 대상	금지 내용
비행	베이징 행정구역 전체를 통제구역으로 지정, 드론 비행 금지
보유·보관	드론과 핵심부품을 갖고 있거나 보관하는 것 금지. 등록 여부와 관계없음
반입	드론·핵심부품을 운송하거나 휴대해 시 경계 안으로 가져오는 것 금지
판매·임대	시내 기관·개인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. 온라인 쇼핑몰도 차단 의무
제조·개조	불법 생산·조립·개조 금지. 비행제한을 푸는 프로그램 개조(제한 해제)도 금지

* 핵심부품은 기체·비행제어·통신·동력 4대 계통 17종. 부품을 따로 사서 조립·개조하는 우회로까지 막은 것

나. 예외 인정 제도(제6조)

- 예외는 세 부류 : ① 대테러·재난구조·중대행사 ② 학교·연구기관·기업의 교육·연구·생산 ③ 농림업
- 공안기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안평가를 거쳐 승인하고 허가 목록으로 관리. 목록에 없으면 모두 위법
- 승인받은 기관은 안전관리제도 마련, 책임자 지정, 분실·도난 방지 의무. 예외로 인정돼도 비행은 별도 승인 필요
 - * 농업용 드론은 고도 30m·속도 50km/h·이륙중량 150kg 이하로, 도심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외곽(제6순환도로 바깥) 지정 구역에서만 사용 가능

다. 처벌과 신고 포상(제7·8조)

- 몰래 날리면 **비행 중지·기체 몰수**에 1,000~10,000위안(약 20만~200만 원) 벌금
- 몰래 갖고 있거나 팔면 기체·부품 몰수에 **개인 500~5,000위안, 기관 5,000~50,000위안** 벌금
 - * 보도 기준 온라인 판매업자 1만~10만 위안, 플랫폼 2만~10만 위안.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

□ 원규정(5. 1. 시행)과 달라진 점

구분	5. 1. 원규정	11. 15. 개정 규정
보유	실명등록을 마친 드론은 시내 보관 허용	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
보관 수량	한 주소에 완제기 3대·부품 10건까지	1대도 불가, 수량 기준 자체가 사라짐
정보확인제	공안기관·파출소 방문, 전화 확인 등 3종	시행과 동시에 폐지
경과조치	3개월 안에 등록·확인	9. 12.~11. 14. 보상 처분 채널 운영

□ 기존 드론은 어떻게 처분하나(9. 12.~11. 14.)

처분 방법	지원 내용
지정업체 매입	지정 회수업체에 팔면 매입가의 30%(최대 3,000위안) 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11. 1. 이후는 15%(최대 1,500위안) 로 절반 감액
폐기 회수	10. 31.까지 대당 200위안 , 11. 1.~14.은 100위안
베이징 밖 발송	우체국(EMS)으로 시 밖에 보내면 확인 후 배송료 면제
직접 반출	11. 15. 전에 소유자가 직접 베이징 밖으로 가지고 나감

- 보조금은 **실명등록·정보확인을 마친 개인 소유 드론**에만 지급. 서두를수록 유리한 구조
- 11. 15.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은 드론은 **몰수·벌금 대상**
 - * 해외 언론은 매입가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‘사실상 몰수’라고 비판, 중국 언론은 편의 조치라고 강조

□ 평가 및 진단

가. 왜 이렇게까지 강화했나

- 베이징은 관광객 드론 반입 금지 등 원래부터 **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저공 통제**를 해 온 도시
- 6. 26. 경비행기가 베이징 최고층 빌딩(CITIC 타워)에 충돌, 조종사 사망·13명 부상으로 **저공 안전 불안 급등**
- 5월부터 등록·확인 방식으로 관리해 왔으나, **등록된 드론도 통제 밖으로 빠질 수 있다**고 보고 보유 자체를 금지

나. 이번 정책의 특징

- 통제 대상이 ‘**날리는 행위**’에서 ‘**갖고 있는 상태**’로 이동. 날린 뒤 단속하는 대신 아예 갖지 못하게 하는 사전 통제
- 생산·판매·온라인 거래·운송·우편·보관까지 **유통 전 단계를 연쇄 차단**
- 예외 기관에 관리제도·책임자·사고 방지 의무를 지워 **예외가 구멍이 되지 않도록** 설계
- 벌칙만이 아니라 **매입 보조금·무료 우송·신고 포상** 같은 경제적 유인을 함께 사용

다. 시장과 여론의 반응

- 4월 판매 금지 전 DJI 매장 재고가 동나고 사재기·중고 역외 판매 급증 → 이번 개정으로 **그 물량 전부 처분 대상**
- 상하이영토의 약 46%를 허가 없이 날릴 수 있는 구역으로 개방 → **같은 나라 안에서도 도시별로 정반대**
- 해외는 재산권·취미 제한과 매입가 불투명성을 비판, 중국 내 여론은 안전 필요성과 불편 사이에서 엇갈림

□ 항공보안 측면의 시사점

가.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

- 우리는 「항공안전법」·「드론법」이 **드론 산업 육성**을 국가 정책으로 삼고, 헌법상 재산권·과잉금지원칙도 적용
→ 전면 보유 금지 도입은 **법적·정책적으로 부적절**
- 다만 「항공안전법」 제127조에 따라 **시설·행사 단위의 한시적 비행 통제**는 이미 가능

나. 대드론시스템 허점 보완 : 내부 보유 드론과 예외 인정 드론 관리 강화

- 대드론 장비(레이더·전파탐지·재머)는 **밖에서 날아오는 드론**을 잡는 도구. 다음 두 종류는 장비로 걸러지지 않음
- **내부 보유 드론** : 직원·협력업체가 시설 안에 이미 갖고 있는 드론. 안에서 띄워 외곽 탐지망에 안 걸림
- **예외 인정 드론** : 방송·경비·소방·점검용으로 띄워야 하는 드론. 장비는 허가 기체인지 구분 못 함
- 따라서 **보유 현황·보관 책임자·허가 목록**을 미리 정하는 관리 체계가 장비와 함께 있어야 완성
* 베이징 규정은 바로 이 세 가지(누가 갖고, 누가 책임지고, 누구를 예외로 할지)를 법으로 정한 것

다. 4단 정책모델(안)

- 위 두 허점을 메우려면 **비행 통제(①②)와 보유 관리(③④)를 한 세트**로 묶어야 함
- ①②는 현행법으로, ③④는 시설 규정·계약으로 가능. 베이징의 원리를 **시설·행사 단위로 축소**한 것

단계	조치 방안	근거·수단
① 임시비행금지	시설·행사장 일대에 기간·구역을 정해 비행 금지, 종료 시 자동 해제	항공안전법 제127조
② 화이트리스트	꼭 필요한 기관의 기체·조종자·용도를 미리 등록해 목록 관리	비행승인 + 시설 보안계획
③ 장비보관 책임	보유 드론 현황 신고, 보관책임자 지정, 반출입 기록, 분실 즉시 신고	내부규정·협력업체 계약
④ 예외기관 보안평가	등록 기관의 관리제도·책임자·교육 평가, 만료 시 재평가·합동훈련	보안평가 기준·훈련계획

* 목록 등재가 법정 비행승인을 대신하지 않으며, 목록에 없는 기체는 위험도와 대응 권한을 확인해 조치

□ 결론

- 베이징의 전역 보유 금지는 수도 안보를 최우선에 둔 **세계에서 가장 강한 드론 통제 사례**
- 그대로 들여올 조치는 아니나, **누가 갖고·누가 책임지고·누구를 예외로 할지**를 정하는 설계 원리는 바로 참고 가능
- 협회는 중국의 파격 조치와 시행 이후 동향을 **지속 모니터링**하고, 국내에 적용 가능한 **관리 모델**을 연구할 방침

※ 참고자료

- [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규정\(2026. 9. 11. 개정\) 원문](#) (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, 2026. 9. 13.)
- [신개정 규정 11. 15. 시행, 3종 처분 채널 개방](#) (베이징시 인민정부, 2026. 9. 13.)
- [베이징 무인항공기 신규정 법규 해설\(5. 1. 시행\)](#) (베이징시 인대상무위원회, 2026. 4. 10.)
- [Beijing bans drone possession in the city after earlier moves to tighten rules](#) (AP, 2026. 9. 13.)
- [「항공안전법」 제127조\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\)](#) (국가법령정보센터)